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05가단60435 손해배상(자)  
원 고 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피 고 을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00  
변 론 종 결 2006. 2. 1.  
판 결 선 고 2006. 2.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2,08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06. 2. 16.까지는 연 5%, 2006. 2.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3,511,91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

##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인정사실

(1) 이00은 2003. 12. 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13.9km 지점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비봉IC 방면에서 매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제6경추 분쇄골절, 제6-7경추간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이00과 사이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2, 변론의 전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3. 12. 5. 언니인 박00, 약 2년 전부터 교제 중인 남자친구인 위 이00, 이00의 조

카인 이△△ 등 4명에서 함께 조개구이를 먹으러 아산만 방조제로 가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이00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하여 아산만 방조제에 도착한 사실, 그 후 원고 등 4명은 위 아산만 방조제에 있는 식당 및 노래방에서 다음 날 01:46경까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다음, 적당한 숙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다 같이 위 이00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출발하였는데, 원고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8, 21, 2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만취 상태인 위 이00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험을 자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이00로 하여금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원고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도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던 점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0%(원고 과실비율 4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다(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70,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단법인 한국모델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 취지, 경험칙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상인의 70% 정도로 여명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인의 경우 3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51.39년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35.973년(= 51.39년 × 70%)이고, 따라서 여명 종료일은 2039. 11. 17.이 된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1999년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패션모델로 종사하여 왔으므로(을 제1호증),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4. 5. 31.까지는 노동부 발간의 200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중(소)분류별 모델 및 홍보종사자(직종분류번호 53번) 3 내지 4년 경력 여자 근로자의 월평균수입인 1,436,252원{= 월 급여액 1,183,784원 + (연간특별급여액 3,029,622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그 다음 날부터는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중(소)분류별 모델 및 홍보종사자 3 내지 4년 경력 여자 근로자의 월평균수입인 1,554,981원{= 월 급여액 1,272,333원 + (연간특별급여액 3,391,783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1993. 6. 4.부터 위 사고시까지 10년 이상 모델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 모델 및 홍보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까지 10년 이상 모델로 종사하여 왔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유치원 교사로 1년 정도, 무용

강사로 6개월 정도 각각 종사하였다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가동연한: 원고와 같은 여성 패션모델의 활동 영역 및 근로형태는 노년층 광고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패션모델의 연령별 분포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45세가 될 때까지(2018. 7. 5.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도시 보통인부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경수 손상에 의한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을 100%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기왕 치료비

합계 21,040,300원 중 10,970,000원(갑 제7호증의 71 내지 74)은 전기자극치료를 위한 FES, 기립기 등 구입비로서 그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적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10,070,300원(= 21,040,300원 - 10,970,000원)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 다. 향후 치료비

(1) 원고는 신경외과 신체감정일인 2005. 7. 11.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지속적인 진찰,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로 월 평균 금 537,376원(= 1년분 치료비 합계 6,448,522원 ÷ 12개월)이 필요한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에서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위 향후 치료비 손해를 인정하되, 사고일로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2) 원고는 비뇨기과 신체감정일인 2005. 4. 28.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약물 치료 및 검사, 넬라톤 사용, 1년에 1회 정도 요로감염에 대한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1,330,132원(= 항콜린성 약물 438,000원 + 방광기능검사 및 요로조영술 418,132원 + 넬라톤카테타 5,000원×12개월 + 멸균장갑 7,000원×12개월 + 젤 5,000원×4개×12개월 + 테고액 4,000원×12개월 + 식염수 1,000원×2병×12개월 + 균배양검사 9,971원 + 항생제 34,860원), 월 평균 110,844원(= 1,330,132원 ÷ 12개월)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에서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위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하되, 사고일로부터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간기능과 말초혈액 검사비 18,000원 및 일반요검사비 8,580원은 신경외과 향후치료비와 중복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 라. 간호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성인 여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인의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비용 상당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마. 보조구구입비

원고는 여명 기간 동안 바퀴의자, 바퀴의자용 욕창방지 방식, 욕창방지용 침대 깔개, 특수침대, 특수 변기의자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비용 상당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위 각 보조구별 단가, 수명, 필요일시, 비용 계산근거는 별지 '보

조구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바.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60%(위 1의 다.항 참조)

사.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8,719,8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31,487,936원(= 78,719,840원 × 40%)

(2)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51,000,000원

아. 위자료

38,000,000원(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 \_\_\_\_\_